

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강유정의원 대표발의)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표준계약을 사용하는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에 대하여 이스포츠 산업에 관한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현장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을 제고하고자 함(안 제7조의2 등).

II. 검토의견

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.

(전문위원 이 화 실)